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1. 7.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제3조 제3항의 1 당연직 위원 중 과학경제과장을 업무담당과장인 노동복지과장으로 함이 타당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3항의 1 당연직 위원 중 “과학경제과장”을 “노동복지과장”으로 수정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3항의 1 당연직 위원 중 “과학경제과장”을 “노동복지과장”
으로 수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주민생활 지원과장, <u>과학경제과장</u> 2. (생략) ④ (생략)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주민생활 지원과장, <u>노동복지과장</u> 2. (원안과 같음) ④ (원안과 같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 ①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예산범위 내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방향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련 서류
3. 기타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목적으로 규약, 조직, 체제 등을 구비하거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② 시장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 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적 기술·지식제공을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결정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 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 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 (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기대 효과 등

제14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사회적기업 등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준한다.

제15조(목적외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반하여 사업계획 이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정기·수시로 검사하도록 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참여 장려) 시장은 구미시 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 (하천쓰레기수거, 문화재주변정비, 행정사무보조, 청소 용역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20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목적			
⑦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⑧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⑨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 서류	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구미시 지정 제 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기관은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